도시형 생활주택 건립…광주 도시재생 모델

호두메 마을 사업 사실상 실패

광주시, 도시공사 특별감사

타당성 검토 허술 등 20건 적발

광주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 모델로 추진한 호두메 마을 분양 등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호두메 마을 분양사업 사전 타당성 검토 부적정 등 20여 건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11일 광주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기관경고를 비롯해 시정과 주의, 개선 등 27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

중징계와 경징계 각 2명과 경고 3명, 주의 1명, 훈계 19명 등 27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2억3000여만원을 감액하고 1200만원을 회수하는 등 재정상 조치도 2억4200만원에 달했다.

도시재생사업 모델로 야심 차게 추진됐던 동구 산수동 이른바 호두메 마을 재생사업은 사업 전반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미흡 등 졸속으로 추진한 점이 드러난 셈이다.

감사 결과 건립공사 당시 시공사와 미분양 시 12가구를 대물변제하기로 했으나, 현금으로 26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계약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업은 호두메 마을에 249억원을 들여 6층 건물 4개동 95가구 등 모두 95가구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분양은 고작 14가구에 그치고 나머지는 미분양됐다.

이후 분양 입주자들이 계약해지, 분양가 인하 등 거센 반발도 이어졌다.

진곡산단 조성공사에 대해서도 도로포장 불량, 조경수 고사, 저류지 정비공사 부실 등이 지적됐다.

퇴직한 임직원 동우회에 보조금 부당 지급, 경쟁입찰 대상사업 수의계약 체결,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망월묘지공원 공동장의시설 조성공사 감독업무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이밖에 영락공원 민원 전산관리 부적정, 농성동 보금자리주택 건립공사 책임감리 업무 소홀, 환경보전비 사용 부적정 등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7월 초 10일간에 걸쳐 감사위원회 2개 팀 12명이 진행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 서품식 11일 오후 광주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사제·부제서품식에서 서품 후보자들 바닥에 낮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 김희중 대주교 주례로 열린 이날 서품식에선 부제 7명이 사제로, 교구신학생(7명)·수도회 신학생(3명) 10명이 부제로 서품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앰코코리아 광주사업장 3월까지 500명 증원

서울 설비 일부 분산 배치

고용 4000여명으로 늘어

세계적 반도체 패키징 기업인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코리아) 광주사업장이 오는 3월까지 500여 명의 근로자를 추가 증원시켜 총 4000여 명으로 고용 규모로 확대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앰코코리아는 최근 서울에 위치한 사업장 부지를 매각하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송도 사업장과 광주사업장으로 서울 사업장의 인원과 설비 일부를 분산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계획으로 광주사업장 근무 인원은 서울 사업장 일부 인원과 신규 고용 인원 등 500여 명이 증가해 총 4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나스닥 상장사이자 세계 반도체 후공정·테스트 분야 2위 기업인 앰코코리아는 미국 애리조나 템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6개국 22개 사업장을 운영한다. 연간 매출은 약 4조원, 종업원 수는 2만여 명으로, 이중 한국 법인인 앰코코리아는 연 매출액 1조4000억원 수준이다. 광주사업장의 매출액은 약 1조원으로 광주 사업장 생산량의 90% 정도가 수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앰코코리아의 증설에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숨은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는 후문이다. 윤 시장은 그동안 수차례 앰코코리아 광주사업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근로자들을 격려해왔고, 앰코코리아 박용철 한국법인 대표를 직접 만나 광주사업장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미국 본사 김주진 회장에게 친서를 전달, 앰코코리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전하면서 광주사업장에 투자 확대를 요청해 결실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시행 100일 넘어선 김영란법

권익위 "3·5·10 규정, 불변의 진리 아니다"

"경제·사회 상황 따라 탄력 운용"…시행령 개정 나설 듯

국민권익위원회가 11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시행 100여 일 만에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3·5·10 규정 가액 한도 규정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며 "경제·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을 의미하는 말이다.

성 위원장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3·5·10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또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의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 위원장의 발언은 "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부패 근절, 과도한 접대문화 개선 등의 사유로 법이나 시행령 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소비위축을 초래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을 결국 수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나오지 않고 있으나 결국 '3·5·10'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설·추석 등의 명절 또는 화훼나 농·축·수산물 등 특정 업종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명절 기간에 뇌물성 선물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연합뉴스

스승의날 학생 대표가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

권익위 적용사례 발표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탁금지법 질의 사례 등을 공개했다. 다음은 청탁금지법 적용사례 답변.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전보나 승진에 대해 인사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5만원을 초과하는 난이나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가능하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인 탁상 달력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다.

▲졸업식날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다만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춰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

▲ 돌잔치 축하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떡을 돌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전남도 설 선물 안내 책자 고가제품 사라져

575개 품목중 5만원 이상 26개뿐…대목 실종 걱정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남도가 배포한 농수축산물 선물 안내책자에서 고가 제품 상당수가 자취를 감췄다.

법이 허용한 선물 가액 기준인 5만원을 넘지 않으려고 소포장하거나 재료를 줄이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소고기는 5만원 넘는 가격표와 함께 아예 목록에서 사라졌다.

11일 전남도가 배포한 2017 설 명절 농수특산물 안내책자에는 262개 업체 575개 품목이 소개됐다.

5만원이 넘는 제품은 홍쌍리(매실), 신광수(전통작설차), 유영군(창평쌀엿·한과), 오희숙(전통부각), 박순애(동백선물세트), 기순도(전통 장) 등 명인들의 제품을 중심으로 모두 26개에 불과했다.

굴비, 전복 등 비교적 비싼 수산물은 기준을 간신히 맞췄다.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전복 6마리(750g), 황해수산 영광굴비 1.8kg은 4만9900원이었다. 지난해 추석 굴비 20미 1.9kg의 가격은 7만5000원이었으며, 진도 참전복 1kg은 5만원에 각각 판매했다. 예년 명절에 '시세변동'이라는 표기가 붙기도 했던 소고기는 축산물 목록에서 사라졌으며, 해남 땅끝 애돈 영농조합법인의 소시지 2.1kg(10팩)에는 4만9000원 가격표가 붙었다.

참전복 장조림 1kg, 양념전복 1kg, 한라봉 5kg(14개) 등은 5만원에 판매된다.

지난해 추석 5만3000원이었던 왕건이 탐낸 쌀 20kg은 4만9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추석에는 20kg 가격이 5만6000원인 상품도 있었지만, 이번 책자에 소개된 쌀 가격은 4만3000~4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추석 때 배포된 같은 책자에는 914개 품목이 소개됐으며 곶감, 표고, 각종 진액, 한우, 한과, 굴비, 전복 등을 중심으로 5만원 이상 제품이 3분의 1 정도를 차지했었다. /윤현석기자chadol@